

# 예산회계법시행령 입법예고

재무부는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를 폐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보다 2배로 연장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 폐지

재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를 폐지, 공사현장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발주관서의 장이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때의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수차에 거쳐 관계요로에 진정 건의했었다.

그 결과 재무부는 UR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국내 건설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립하여 공사의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공사의 분할발주금지)를 삭제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12월 30일자로 입법예고했던 것이다.

그밖에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해 공사도급업체중 반드시 공사가 시행되는 그 지방의 업체 1개사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했는데 이 규정은 '96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도록 했다.

[2] 세출예산의 연도말 이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정가격 1백억 이상의 교량·고속도로 등 턴키발주, 대안입찰, PQ적용대상 14개 공종의 공사는 입찰공고만으로 이월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3] 시공감리의 전문감리회사 위탁범위를 계약금액의 50억 이상의 토목, 건축공사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하자보증기간을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이상의 아파트 공사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하는 주택관련법 및 건설업법의 규정을 이 시행령에 받아들였다.

■ 예산회계관계법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70조 (공사의 분할발주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p>	<p>-공사의 분할발주여부는 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함. ○행정쇄신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p>
<p>제74조 (공동계약) ①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p>	<p>제74조 (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상을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공동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및 제2항 단서규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행정쇄신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93. 12. 10) ○부산시,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건의 ('93. 7) ○지방소재 건설업체 건의 ('93. 7) -동제도는 '96. 12. 31까지만 운용 ○'97. 1. 1 부터 GATT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동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체에의 기술이전 및 경험습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p>
<p>제90조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1-6. (생략)  〈신설〉</p>	<p>제90조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 ..... ..... 1-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제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p>	<p>-경제의 자율화 및 대외 시장개방 추세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경우 단체수의 계약제도 대신에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을 가능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p>



법령과 고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26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6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1년 이상 10년 이하            ……………            ……………            ……………            ……………</p>	<p>-법 제84조 개정에 따른 보완</p>
<p>제136조 (국고금출납보고서의 제출)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개선 건의</p>
<p>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p> <p>(생략)</p> <p>〈신설〉</p>	<p>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매회계년도 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나 국가채무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국가채무현황을 파악하고자 함.</p> <p>-지역공동도급의무화 제도는 '97. 1.1 부터 GATT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므로 96. 12. 31까지만 운용</p> <p>○'94~'96 동안 동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에의 기술이전 및 경험취득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킴.</p>



법령과 고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한다. 이하 같다)과 일반건축물중 교정시설(수용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의 공사: 3년</p> <p>4.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일반건축(공동주택외의 건축을 말하며, 교정시설을 제외한다)·부지정지·조경시설물설치·조경식재(나무의 높이가 4미터상이거나 흉고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수목류의 식재의 경우에 한한다)등의 공사: 2년</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사: 1년</p> <p>② (생략)</p>	<p>제외한다) ..... ..... ..... 6년</p> <p>4. .... ..... ..... ..... ..... ..... 4년</p> <p>5. .... 1-3년</p> <p>② (생략)</p>	
<p>제78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 및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별표】</b>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9조 관련)</p> <p>1. (생략) 2.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사. (생략)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사"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p> <p>3. (생략)</p>	<p>제78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① ..... 법 제80조제1항 단서 ..... ..... .....</p> <p><b>【별표】</b>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9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 ..... 가-사. (현행과 같음) 아. .... 체결 또는 이행하지 ..... .....</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예산회계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p> <p>-조문정리</p>